의왕시 고시 제2026-107호

의왕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(경미한 사항)변경 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

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-1 일원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(경미한 사항) 변경신고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
의 왕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가. 종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 나. 명칭: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 가. 위치: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-1 일원
 나. 면적: 6,348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가. 착수예정일: 2028년 8월
 나. 준공예정일: 2031년 12월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 가. 명 칭: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: 설정숙)
 나. 소재지: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

5. 변경사항
 가. 조합임원 및 조합원 변경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 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	비고
기정	-	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	의왕시 삼동 부곡중앙남4길 11-1 일원	6,348.0㎡	

 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사유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위 치	결정사유
기정	-	의왕시 삼동 부곡중앙남4길 11-1 일원	◦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결정

 다. 지형도면